

2023년도 제29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3. 11. 27. 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박재화(분과위원장), 송수현, 오영주, 홍승기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3-290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사무처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3,322건(안건번호 제2023-240215호~243536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3-240215호(순번 1번)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논문 목록이 복제 및 게시된 사안으로, 저작물성을 판단하기가 어려워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권리자의 직접 조치가 가능한 것과 별개로 시정권고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3-240216호(순번 2번)는 카페에서 더빙 연습용으로 가공된 영상을 전송한 사안으로,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권리자의 직접 조치가 가능한 것과 별개로 시정권고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3-240217호~240222호(순번 3번~8번)는 웹하드에 출판물의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그 외 안건번호 제2023-240223호~243536호(순번 9번~3322번)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5,189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
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
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박재화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298회 저작권보호심
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3-290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박재화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 주시기 바람.
제1호 안건 회의록과 관련하여 민원 관련 부분,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권리자, 저작물명, 게시물 제목 등이 노출된 부분의 비식별 처리 된
부분 관련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비식별 처리에 동의함.
- 이숙형 부장: 제2호 안건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전체 비공개하고 쪽수만
기재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음.
- 참석 위원 전원: 제2호 안건 비공개 처리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제1호 안전 부분을 비식별 처리 후 공개하고, 제2호 안전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회의 부분인 10쪽~13쪽은 저작권보호심의 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 함.

3. 안전상정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이숙형 부장: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 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제2023-298회 시정권고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숙형 부장: 이번 심의안건은 일반인이 신고하거나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발견된 불법복제물에 대하여 보호원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기 위하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33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5,197건의 복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해당 이용자들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에 관한 심의임. 검토

보고서 상의 관련 법령과 규정 및 심의 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숙형 부장: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은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ㄱㄱㄱㄱㄱ' 홈페이지에 게재된 논문 목록을 '★★★★★★'가 무단 복제했다고 주장하는 사안 총 1건임. 민원인은 'ㄱㄱㄱㄱㄱ'에 재직중인 직원이라고 본인을 밝힘.

기초 사실은 검토보고서와 같으며 민원인이 제출한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 및 민원인의 홈페이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자료를 제시함)

민원인의 주장에 따르면 심의대상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정보로 민법상의 불법행위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상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존재하며, 이는 권리자가 직접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됨.

순번 1번은 저작물성을 판단하기가 어려워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권리자의 직접 조치가 가능한 것과 별개로 시정권고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1번, 홈페이지에 게시된 논문 목록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A 위원: 민원인이 주장하는 바가 명확히 무엇인지? 논문이 표절되었다는 주장인지?

- 이숙형 부장: 논문 자체는 게시되어 있는 사람의 논문이 맞는 것으로 보임. 다만, 민원인 홈페이지에 해당 인물의 논문 목록이 다수 나열되어 있는데, '★★★★★★'에서 그 목록을 복제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는 주장임. 하지만, 논문 목록의 저작물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민원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인물이 어느 기관 소속인지, 어느 홈페이지가 먼저 만들어진 것인 등의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 B 위원: 현재 심의대상 게시물은 홈페이지 운영이 중단된 것으로 보임.
- C 위원: 두 기관 간에 양도·양수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심의로 해결할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임.
- A 위원: 저작권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심의 대상인지 따져 보아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
- 이숙형 부장: 최초에는 홈페이지의 디자인 표절 부분과 특정 인물의 사진을 복제·전송한 부분을 민원으로 접수하였으나, 해당 부분은 보호원이나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할 부분이 아니라고 설명하였고, 허위 사실의 기재라던가 초상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민원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였으나, 논문 목록에 대해 심의 결과를 받고 싶다고 하여 해당 부서에서 심의 안건으로 상정함.
- B 위원: 민원인의 주장에 대한 진위 여부를 떠나, 심의대상 게시물

이 더 이상 전송되고 있지 않으므로, 민원인이 문제제기한 부분은 일면 해소된 것으로 보이며,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처럼 논문 목록의 저작물성 여부나, 전체 사안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임.

- 박재화 분과위원장: 더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부결 의견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에 대해 부결함. 계속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람.
- 이숙형 부장: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 카페 ‘♡♡ ♡♡♡♡ ♡♡♡♡♡’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 ☆☆☆ ☆☆☆☆☆’를 복제·전송한 사안 총 1건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 □□ □□□ □□□□□ □□ □□ □’라는 제목으로 원저작물인 ‘◇◇ ◇◇◇ ◇◇◇◇◇’ 4기 13화의 1/2분량으로 더빙한 영상물을 게시하고 있음. 제목 및 내용으로 보아 성우지망생들이 연습용으로 더빙한 게시물로 보임.
정식유통 저작물은 OTT 등에서 제공중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권리자의 허락 없이 원저작물을 복제·전송하고 있는 점은 명백하며, 음성을 삭제한 점에 있어 단순한 복제·전송과 달리 평가할 여지도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다만 심의대상 게시물은 단순히 불법복제물의 공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며, 합법 시장에서의 원저작물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도 보이지 않음. 권리자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별론으로 하고 보호원의 시정권고로써 제재할 필요성 및 타당성은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따라서, 순번 2번은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권리자의 직접 조치가 가능한 것과 별개로 시정권고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2번, 카페에 게시된 영상 불법복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C 위원: 해당 영상을 다시 재생하여 주기 바람. (심의대상 게시물 영상을 재생함)
- D 위원: 음질이 좋지 않아 감상 목적으로 보기는 어려움.
- C 위원: 저 정도라면 대사 전달은 충분히 되는 거 같음. 그러나 전체 분량도 아니어서 합법 시장을 대체한다고 판단하긴 힘들 것으로 생각됨.
- A 위원: 원안대로 부결 의견에 동의함.
- B 위원: 1/2 분량이라도 원본이었다면 가결했을 것임. 해당 사안은

조금 애매함. 카페에서 카페와 동일한 유튜브 채널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어 상업적 목적이 아예 없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생각임. 그렇다고 해당 영상 저작물의 합법 시장을 대체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임.

- 박재화 분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지?
- C 위원, D 위원: 부결 의견임.
- A 위원: 이런 게시물까지 시정권고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임.
- 박재화 분과위원장: 그럼 순번 2번에 대해 만장일치로 부결하겠음.
- 이숙형 부장: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3번~8번은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웹하드에서 판매중인 만화와 웹소설 등 출판 불법복제물 총 6건임.
심의 대상 게시물들이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3번~8번, 웹하드에서 판매중인 불법복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가결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3번~8번에 대해 시정권고로 가결함.
- 이숙형 부장: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9번~3322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총 5,189건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출판물, 음악, 게임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드라마 '힘센여자 강남순'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841번은 드라마 '힘센여자 강남순'으로, 2023. 10. 7.부터 JTBC에서 방영 중인 최신 드라마의 한 개 회차 전체 분량을 웹하드에서 판매중인 사안임.
(영화 '1947 보스톤'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503번은 영화 '1947 보스톤'임. 2023. 9. 27.에 개봉해서 현재 OTT 등에서 단품으로 판매중인 최신 영화를 웹하드에서 제공중임.
(영화 '더 마블스'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3220번은 웹하드에서 판매중인 영화 '더 마블스'로, 2023. 11. 8.에 개봉하여 현재 극장 상영중인 최신 영화의 전체 분량을 제공중인 사안임.
해당 3건을 포함하여 순번 9번부터 3322번까지 총 5,189개의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으로 복제한 영화, 드라마, 음악, 만화, 웹소설, 게임 등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각자 모니터링 자료를 확인하시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를 확인함) 해당 안건은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출판물, SW, 게임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9번~3322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240215호~240216호(순번 1번~2번)에 대해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240217호~243536호(순번 3번~3322번)에 대해 불법 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4. 폐회 선언

- 박재화 분과위원장이 제29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3년 제29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12. 4.

분과위원장 박재화

위원 오영주

위원 송수현

위원 홍승기